

「KB 청년도약계좌」 특약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KB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적금’)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적금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이하인 사람
 -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 나. 사회복무요원
 -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단,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기준^{주2)}을 충족하는 사람
 -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나. 가구원^{주3)}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할 수 있음)
 -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 3)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 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가구원을 확정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주 4)}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세법」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 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 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② 이 적금에 가입한 후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 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③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적금은 이 적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틀어 1인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 ⑥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합니다.

제3조 가입신청 및 적금가입

이 적금은 가입신청 후 제 2 조의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합니다.

제4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자유적립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5 년으로 합니다.
 (단, 만기일 전에 해지 할 경우 만기해지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 ① 이 적금은 회차별 최소 1 천원 이상 1 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 만원 범위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주 5)} 납입 한도는 84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 5) 예) '23.7.10 가입 시 → 1 년차('23.7.10~'24.7.9), 2 년차('24.7.10~'25.7.9),
 3 년차('25.7.10~'26.7.9), 4 년차('26.7.10~'27.7.9), 5 년차('27.7.10~'28.7.9)
- ②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자 지급 방법

- ① 이 적금의 기본이율은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기본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이 적금의 만기이율은 제1항의 기본이율에 제7조의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동안 적용합니다.
- ③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제2항의 만기이자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우대이율

아래 항목별로 제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항목	제공 조건
급여이체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 ^{주6)} 가 입금된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자동납부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동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주7)} 월수 36회 이상 ②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주8)}
거래감사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주9)} 신규 가입 고객 또는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소득플러스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주10)} 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최고 연 0.5%p) ○ 5회 : 연 0.5%p / 4회 : 연 0.4%p / 3회 : 연 0.3%p / 2회 : 연 0.2%p / 1회 : 연 0.1%p

※ 주 6) 급여 인정 세부 기준 (※ 당행 본인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 영업일 포함 3 영업일)에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탐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 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주 7) 공과금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FBS 인 출금건에 한함

※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상기 외 출금건인 경우 제외(국민카드, 공과금 등), 계좌간 자동이체 출금 건 제외

주 8) 본인 명의로 KB Liiv M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단, 1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시,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

주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 10) 총급여기준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기준 1,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 10 조 제 2 항의 [표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상 개인소득구간이 1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세율의 적용

- ① 제5조에 따라 납입된 저축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1.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2 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제 9 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제외)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3.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 ③ 제 10 조 제 5 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 ① 이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마. 이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적금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 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②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 ①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 2 조의 가입 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를 포함)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1.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2.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 ② 정부기여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표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구간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기여금 지급비율
구간	총급여기준	종합소득기준		
1	2,400 만원 이하	1,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 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	2,400 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1,600 만원 초과 2,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 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	3,6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이하	2,600 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 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	4,800 만원 초과 6,000 만원 이하	3,6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 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5	6,000 만원 초과	4,800 만원 초과	미지급	

- ③ 제 2 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은 제 5 조에 따른 매월 및 연간 저축 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만 지급합니다.
- ⑤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는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 ⑥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 ① 제 10 조 제 2 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 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주 11)}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턴 다음 해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주 11)}됩니다.

※ 주 11) (예시) '23.7.10 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② 제 1 항의 개인소득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확인결과에 따라 제 10 조 제 2 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제12조 재가입 등

- ① 이 적금은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 12)}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원 미만 절사)
※ 주 12)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제13조 기타

-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②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 10 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나이요건, 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소득기준, 제 11 조의 개인소득금액은 진흥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④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 10 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